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13. 2. 28.

제 출 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범위를 구미5공단(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 등 같은 유형의 조성사업은 범위에 포함시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중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을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수정하며
- 안 제2조 제2호 중 ‘구미시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을 ‘구미시 일원’으로 수정한다.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중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을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제2조 제2호에서 ‘구미시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을 ‘구미시 일원’으로 수정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u>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이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이주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u>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u>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택지 공급을 신청한 자 가운데 이주 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 이주한 자를 말한다.	제1조(목적) ----- <u>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u> ----- ----- ----- ----- ----- -----. 제2조(정의) ----- -----. 1. ----- ----- ----- ----- -----<u>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u> ----- ----- ----- ----- -----.

2. “이주정착지”란 공익사업법 제 78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구미시 옥계동 및 산동면 일원 사업구역 내에 조성하는 10호 규모 이상의 집단이주지역(주택단지를 포함한 다)을 말한다.

제3조(예산) 임시이주자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익사업법 제 81조에 따른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 수수료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구미국가 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이주자가 부담하는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을 제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환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2. -----
----- 구
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구미시
일원 -----

-----.

제3조(예산) -----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

제4조(재정지원 등) ----- 구미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

-----.

제6조(지원금 환수 등)

① (원안과 같음)

수 있다.

1.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2. ~ 4. (생략)

② (생략)

1. -----구미국가산업단지 -----

2. ~ 4.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이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이주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택지 공급을 신청한 자 가운데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이주한 자를 말한다.
2. “이주정착지”란 공익사업법 제78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해 구미시 일원 사업구역 내에 조성하는 10호 규모 이상의 집단이주지역(주택단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예산) 임시이주자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익사업법 제81조에 따른 구미시의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위탁 수수료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임시이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지 조성 기간 동안 임시이주자가 부담하는 주택임차료 등의 비용을 제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상협의회 구성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공익사업법 제82조에 따라 구성된 보상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보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금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2.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금 환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구미국가산업단지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2.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과오지급이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하며, 연체이자 산정은 지원금 입금일자를 기준일로 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 조례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